

4.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 : 2008년 2월 4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관리실장)
- 회부일자 : 2008년 2월 4일
- 상정 및 의결
 - 제1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 -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: 2008년 2월 18일

2. 제안설명 요지

- 사무위임의 근거법률인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(안 제1조 안 별표 1)
- 구청장·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(안 별표 2)
 - 부상 또는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로 야생동물의 치료 및 재활효과를 높이고자 부상 또는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업무를 신설
 - 「축산법」, 「지하수법」, 「토양환경보전법」, 「수도법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
- 단위사무를 조직의 기능에 맞게 재분류(안 별표1, 별표2, 별표3)

3.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
 -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
 - 구청장·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서 조난당한 야생 동물의 구조 및 치료업무를 신설하고 「축산법」, 「지하수법」, 「토양환경보전법」, 「수도법」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한편,
 - 직제순에 맞게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구청장·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에서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의 시행으로 부상 또는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업무를 구청장·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에 추가하고, 「축산법」, 「지하수법」, 「토양환경보전법」, 「수도법」 등 근거법령 개정되어 법령에서 바로 구청장·군수에게 수입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,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권한이 시·도지사에서 중앙정부로 회수되는 내용을 반영한 것임.
 - 안 제1조와 안 별표1, 별표2, 별표 3은 사무위임의 근거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변경과 순서 조정은 기구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순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.
- 검토결과
 - 이번 조례개정안은 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 권한의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·군수 및 보조·보좌기관에 위임하고, 위임사무 중 폐지된 사무와 권한이양된 사무를 삭제하는 등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여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됨.

- 다만,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관련 근거법령이 제·개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법령도 있는 점(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, 「지하수법」, 「토양환경보전법」, 「수도법」 개정 : 2005년) 등을 감안할 때, 비록 근거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매번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나, 사무위임조례가 위임사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만큼 향후에는 각 위임사무별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리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상위법으로 사무위임한 내용중 지하수 이행실태조사와 같은 지역 현실과 상이한 것의 처리는?	○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음.
○ 조례 개정 전에 위임사무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? 향후에는 상위법이 제·개정 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조치바람.	○ 상위법에서 위임사무로 명시되어 있어 업무 집행에는 문제가 없으며, 향후에는 상위법 제·개정 사항의 조속한 조례 반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.

5. 토론사항

-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전원찬성)